

##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5
------	-----

제출년월일 : 1998. 8. 18.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1. 개정이유

-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계 직제가 폐지되므로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계 직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2조제3항)

### 3. 본문

고성군조례 제 호

##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과 전문위원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조직) ①(생략) ②(생략) ③ <u>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u>	제2조(조직)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u>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과 전문위원을 둔다.</u>